조기취업생 학사관리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의과학대학교의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의 졸업학기 중 취업한 재학생의 출석과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특례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기) ① 당해 졸업예정자의 취업은 2학기 중간고사 이후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부득이한 경우 졸업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전의 취업은 라이프가이드교수와 담당과목 전임교수 및계열/학과장의 동의하에 허락할 수 있다.

제3조(이수) ① 주간 학생의 조기취업은 직장이 부산.경남 소재이고 근무시간이 주간일 경우 졸업까지의 수학은 야간반에 편입하여 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직장이 부산.경남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야간반 편입이 곤란하여 수학이 어려운 경우는 라이프 가이드교수와 담당과목 교수 및 계열/학과장의 동의하에 별도의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학점 이수를 대신하도록 한다.

제4조(출석 및 학점인정) ① "출석인정"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기간을 수업의 연장 또는 전공 및 교양교과 영역의 현장경험에 해당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.

- ② 중간 및 기말고사는 대학에 출석하여 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레포트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③ 과제는 레포트를 원칙으로 하되, 추수지도 및 리콜교육·전화상담 등의 방법도 인정할 수 있다.

제5조(서류제출) ① 조기취업생은 라이프가이드교수에게 취업확인서(4대보험 가입내역 등 취업확인 가능 서류)를 중간고사 이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학생이 발급 가능한 시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.

- ② 조기취업생은 대학에서 규정한 취업자 학점부여 방안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라이프가이드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조기취업 기간중에는 근무일부터 기말고사 시작일전까지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기말고사 기간중에 근무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출된 서류는 학과에서 취합하여 학과장 확인 후 교무부에 제출한다.

제6조(성적부여) ① 계열/학과에서는 제5조 ①, ②, ③항의 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해야하며 최종 성적은 담당과목교수가 웹에서 성적을 입력한다.

② 조기취업생의 성적은 최대 B+로 제한한다. 단, 조기취업생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출석하여 일반 학생들과 같은 시험을 응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(준수사항) ① 조기취업생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조기취업생의 책임으로 한다.

- ② 조기취업생으로서의 특례를 받는 학생은 학기 중간에 본인의 의사로 퇴직을 하여서는 안 되며, 취업 상태를 기말고사 종료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.
- ③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수업담당교수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, 퇴직일 이후 수업부터 출석하여야 한다.
- ④ 퇴직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기말고사 종료 시점까지 알리지 않고 이후 출석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, 근무일지 및 레포트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출석일수에 따라 유급 처리한다.
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

■ 신청 학생 정보

신청자	성 명			학		번			
인적사항	학 과			전		공			
	생 년 월 일			휴	대	폰			
	취 업 기 관			사업	자등록	컨호			
취업현황	취 업 부 서			취	업 형	태		영규직 🛮 계약	^{ᆤ직} □ 기타
	취 업 일 자			담당	랑자연락	ł 처			
학점이수	전학기까? 취득학점(-	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(B)	수	계절 <i>=</i> 강예정		C)		털계 3+C)
현황									
출석인정 신청기간			20 년	월	일 ^	20) 년	일 일]
개인정보 활용 동의			│ 정보는 조기취업자 │ 내용의 개인정보 ←		인정을 및 이용(

■ 수강신청 강의담당교수 확인

전공/교양(학점)	교과목명	개설학과	담당교수명	담당교수 서명

※ 강의담당교수 유의사항

- 가.「학점인정규정」에 의거 조기취업한 졸업예정자의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함
- 나.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(과제, 시험, 기타 등)을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
- 다. 취업기간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이며, 학점인정은 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

※ 조기취업자(학생)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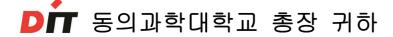
- 가. 해당학기 중 취업확정 시점에 신청하여야 함
- 나. 수강과목별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
- 다. 학기 중 퇴직 시에는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

※ 제출서류

구 분	증빙서류		
1차 제출	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(서약서 포함) ② 성적증명서		
· · · · · · · ·	③ 졸업예정증명서 ④ 수강신청 확인서(종합정보시스템 출력)		
(취업일기준 2주 이내)	⑤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	
2차 제출	① 근무일지(월별) ②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		
(학기종료 후 1주 이내)	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	

년 월 일

<u>락</u>	생:	(서명)
지도	교수 :	(서명)
한가(년	부)장 :	(서명)



조기취업자 서약서

학	과 :		
학	번 :	성	명 :

본인은 졸업 전 취업을 함에 있어서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 할 것은 물론 위배하였을 시는 대학의 규정에 의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 다.

- 1. 학칙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졸업 전 취업자 준수사항
- 2. 근무지의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(특히 보안관계 기밀유지)
- 3. 근무 중 고의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 및 근무지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
2023 년 월 일

학생 : ____ (서명)



▶ 중의과학대학교 총장 귀하

조기취업자 근무일지

23년 월 학과 성명	
-------------	--

	자	근로시간	언무	내용	학생명	취업처담당자
	요일		0 T	чı о 	(자필서명)	(자필서명)
1		00:00 ~ 00:00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11						
12						
13						
14						
15						
16						
17						
18						
19						
20						
21						
22						
23						
24						
25						
26						
27						
28						
29						
30						
31						
총 근무일수 지도교수						
			00 일			(서명)